

제6조(신규채용 직원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파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, 복권되지 않은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,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,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0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11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거나 수습기간 중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12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사람(판정기준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을 준용하되, 경영관리직 등 필요시에는 일반 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판정할 수 있다)
13. 징집연령 해당자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
14. 채용관련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
15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유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16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